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용하려는 표기부호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부호										
		표기 차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 (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 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